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97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김용태
김태규 · 김승수 · 김정재
김성원 · 강명구 · 김위상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치료보호기관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상담과 지원이 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0조제2항 및 제51조의9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료”를 “치료·재활”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장의2에 제5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9(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상담가(마약류 중독자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상담가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교

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u>치료·예방</u>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치료·재활</u> ----- ----- ----- ----- ----- -----.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예산의 범위에서</u>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u>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 ⑫ (생략)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다음</u> ----- ----- ----- <u>비용의</u> <u>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의9(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상담가(마약류 중독자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상담가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u>그 밖에 동료상담가 양성</u> <u>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u> <u>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u> <u>정한다.</u>
--	--